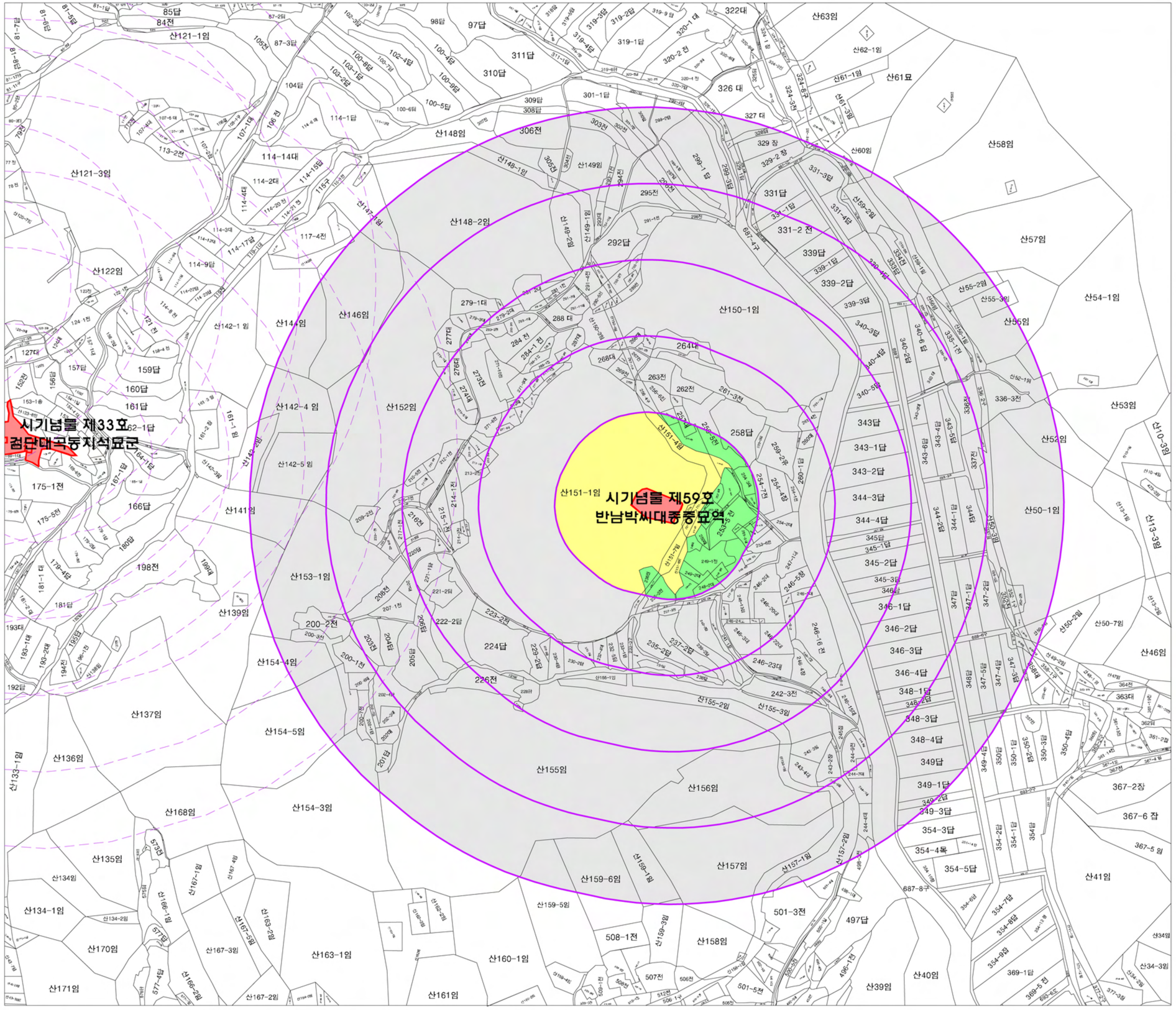

반남박씨대종중묘역
(기념물 제59호)

서구 대곡동 산151-1

현상변경허용기준

범 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구 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 (3:10 이상)
1구역	· 현상변경(신축 및 증축) 허가 신청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함	
2구역	· 최고높이 11m이하	· 최고높이 13m이하
그외지역	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(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
공통사항	·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·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도축장,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·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	

■ SCALE : 1/5,000(A3)

0 50 100 250m

N